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

[시행 2012.1.6] [대통령령 제23488호, 2012.1.6, 타법개정]
보건복지부 (기초노령연금과) 02 - 2023 - 8369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) ① 「기초노령연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(이하 "선정기준액"이라 한다)은 노인가구의 소득·재산수준과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·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, 2010.12.29>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<개정 2010.12.29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08.10.20, 2010.3.15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제3조 삭제 <2008.10.20>

제4조(연금액의 적용 기간)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연금액의 감액)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1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
2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: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(切上)한 금액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급받는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
2.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

제6조(연금의 신청방법·절차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30, 2010.3.15>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·재산 신고서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(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3.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4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(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연금지급신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받으면 연금신청대장을 작성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금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·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금수급희망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, 2010.5.4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신청 받은 때에는 연금수급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연금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금 신청을 받거나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희망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연금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득·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제7조(금융정보등의 범위)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 신청을 할 때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12.30>

1.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
   가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: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
   나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잔액 또는 총 불입액
   다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 : 최종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.
   라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 : 액면가액
   마.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
2.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
   가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  나. 신용카드 미결제금액
3.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
   가. 보험증권 : 해약시 환급금
   나. 연금보험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세부적인 정보의 내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연금의 지급방법)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금은 매월 25일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)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(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)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, 수급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2.30, 2010.3.15>

1.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
2.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3.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, 입금한 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<신설 2009.12.30, 2010.3.15>

③ 제2항의 안내를 받고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09.12.30, 2010.3.15>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09.12.30>

⑤ 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하되,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,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지급한다.<개정 2009.12.30>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금을 지급한다. 다만,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08.2.29, 2009.12.30, 2010.3.15>

제9조(변경신고)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
2. 결혼 또는 이혼, 배우자의 사망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

② 수급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3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(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, 2010.5.4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와 관계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변경된 소득·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5.28>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제10조(수급자 등의 현황관리)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
2. 관할구역 내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
3.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금신청대장

4.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 내역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제11조(확인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조사의 기본방향
2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범위
3. 조사·질문의 범위·내용·시기·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
4.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
5. 그 밖에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,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금융정보등의 요청·제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연금수급희망자·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성명
2. 주민등록번호
3.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
4.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성명
2. 주민등록번호
3. 금융기관등의 명칭
4.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
5.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내용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, 연합회 또는 중앙회(이하 "협회등"이라 한다)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기재된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
2.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기재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
3. 그 밖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

제13조(미지급 연금의 인정기준 등) ① 법 제9조에 따라 미지급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2. 제5항 및 제6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4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(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연금을 청구 받으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, 2010.5.4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연금을 청구받은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미지급 연금을 청구 또는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연금의 지급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, 2009.5.28, 2010.3.15>

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순위는 배우자, 자녀와 그 배우자,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한다.

⑥ 법 제9조에 따라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로 한다.

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동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(均分)하여 각각 지급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제14조(연금의 일시 정지)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8>

1. 수급자가 행방불명이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
2.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
제15조(부당이득금의 환수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사실, 부당이득금액, 납부기한,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때 납부기한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30>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12.30>

제16조(비용의 부담 등) ①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별로 부담하는 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는 매년 시·군·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부담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, 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은 정산한다.

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.

제17조(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, 법 제14조, 법 제15조, 법 제18조, 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산화
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·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
3.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·관리·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
4. 제10조에 따른 수급자 현황의 기록·관리 및 보고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
6.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 생산·분석 및 제공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·관리·보고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써 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탁)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
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
3.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
6.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 지급의 청구 접수

제1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연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
2. 법 제7조에 따른 조사·질문 등에 관한 사무
3. 법 제9조에 따른 미지급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
4. 법 제10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
5. 법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
6.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
7.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2.1.6]

제20조(단수의 처리) 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13조제7항 및 제16조에 따른 계산을 함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